

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0. 13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 18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1. 1.(제87회사하구의회의임시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사회복지과장 황 해 룡)

- 가.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행사업을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도, 의료재활, 교육재활, 직업재활, 사회심리재활,제가장애인복지에 관한사업 및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
- 나.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있도록 규정하며 위탁기간을 5년 이내 규정
- 다.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에게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
- 라.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평동43번지 일원에 장애인에 대한 상담,의료, 교육,직업, 사회심리재활 및 제가장애인의 지도감독등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며

-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할시에는 공개수탁공고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자선정등에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사전조치가 선행 되어야 겠으며 또한 전문적인 재활과 서비스제공을 위한 특수직종 종사자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됨

4. 결 의 및 답변요지 :

- 허명도 의원 : 위탁운영기간을 5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단축하고, 또한 위탁법인 선정시 평가항목등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
- 김상수 의원 :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2-3년주기로 재평가하여 위탁여부 결정하는 방안과 위탁운영 심사는 사회복지위원회에 심사하는 방안 검토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